

의안번호	2208722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C13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국가는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1. 산후조리원이 없고, 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시·군 2.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운영할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시·군 3. 민간산후조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휴·폐업한 민간산후조리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매입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과 같이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지정·운영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권역의 구분 정도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또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현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참고로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설치비	운영비 (2024년 기준)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8,878	2,903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0,195	3,867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9,417	2,127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5,120	1,524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3.	13,700	1,457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880	670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4,640	1,134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7.	2,640	958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1,167	853
강원 양양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5.	6,143	1,259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982	1,120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11.	600	688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7,517	1,400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9,195	1,270
경남 밀양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2022.6.	3,000	564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1,003	467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736	342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설치비	운영비 (2024년 기준)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693	382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263	1,593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00	403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831	625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